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1. 6. 9.>

[]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
[]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
해산 연월일		
청산인	성명(한글)	(한자)
	생년월일	직책
기금법인	명칭	인가번호
	주사무소 소재지	

해산 사유

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52조·제5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해산을 알립니다.

년 월 일

(청산인)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(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해산등기, 파산선고,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) 1부 2. 정관 1부 3. 재산목록 1부 4.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통지서 작성	→	접수	→	확인·검토	→	결재	→	대장 정리 및 전산 입력	→	통보
		근로개선지도과 고객지원실		근로개선 지도과		청장·지청장		근로개선 지도과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